

교육부 소관 법안 「특수교육법」 등 8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두는 등 행동중재 지원의 근거 마련
-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으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 및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교육부는 5월 7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 등 8건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 7.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 >

법률명	주요내용	개정 후 효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근거 마련	· 실태평가를 통해 장애대학생 교육지원 실태, 정책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의 종합적 점검 및 이에 따른 대학의 관심과 참여 제고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근거 규정	·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조기자원 및 체계적인 예방·중재로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 강화
「교원지위법」	·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과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명확히 규정 ·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까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 관할청이 직접 설치·운영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여 교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 ·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보완되어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 구축

이번 본회의에서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근거, 유치원 운영위원회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및 외국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실시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하였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2027년 1월 1일)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각 대학의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공표하는 실태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장애대학생 대상 각 대학의 교육지원 실태, 정책 효과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에 대한 각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 공포 후 1년)

【관련 국정과제】 101-4. 통합·특수교육 강화로 모두의 학습권 보장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학생 맞춤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맞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교용지의 조성·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학교용지의 범위(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주택 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학교용지 확보 의무의 세대수 기준을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과 동일하게 증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수학교 용지 확보가 용이해져 증가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교용지 확보 의무와 관련하여 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합리적인 세대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 추진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 비용의 현금 납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용지 조성 및 개발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진로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 진로체험센터가 지역 현실에 기반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 내 진로체험 교육에 대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학술진흥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학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하고,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성과에 관한 소유·관리를 명확히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학술단체와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연구윤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의 성과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즉시 / 일부 조항* 2027.1.1.)

*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운영)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한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 실시에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규정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의 조성 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장애학생(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사전에 해당 장애학생(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심의 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임의로 진행하던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장애학생(또는 보호자) 요청에 따른 의무적인 절차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향후 위원회의 심의 과정 중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위원회 결정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 유아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유치원 원장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과 그 후보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구성·운영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유치원 교육 현장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2. 교권보호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의 범위를 대면·비대면 교육 활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복적인 민원이 아니더라도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관할청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다 폭넓고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8> 평생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교육 시설을 활용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해지고,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사가 주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이 제고되고, 사회 변화 및 첨단기술 발전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내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붙임】
1.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2. 「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6.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7.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8.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담당 부서 <총괄>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관영 (044-203-6170)
		담당자	사무관	이일경 (044-203-6173)
<특수교육법>	학생지원국 특수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진창원 (044-203-6554)
		담당자	교육연구관	오영석 (044-203-6549)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서기관	남윤철 (044-203-6364)
담당자	사무관	이보배 (044-203-6379)		
<학교용지법>	교원교육자치지원관 지방교육재정과	책임자	과 장	권삼수 (044-203-6636)
		담당자	사무관	양준혁 (044-203-6641)
		담당자	사무관	안수미 (044-203-6642)
<진로교육법>	학교지원관 공교육진흥과	책임자	과 장	박현정 (044-203-6730)
		담당자	사무관	정원일 (044-203-6737)
<학술진흥법>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 장	채홍준 (044-203-6870)
		담당자	사무관	김기형 (044-203-6873)

<학교폭력 예방법>	학생건강안전정책국 학교폭력대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희 (044-203-6972)
		담당자	서기관	박소하 (044-203-6975)
		담당자	교육연구관	문경진 (044-203-6987)
<유아교육법>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책임자	과 장	박혜원 (044-203-7165)
		담당자	서기관	김현준 (044-203-7162)
<교원지위법>	교원교육자치지원관 교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세은 (044-203-6480)
		담당자	사무관	민동영 (044-203-6494)
<평생교육법>	국제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하영 (044-203-6770)
		담당자	사무관	진민탁 (044-203-6769)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백승대 (044-203-6388)
		사무관	오단비 (044-203-6384)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조사 또는 평가에 -----
-----.

제28조의2(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실행·평가 등을 담당하는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행동중재전문가의 자격 및 업무 범위,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자격, 제3항에 따른 행동중재지원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 ⑤ (생략)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세대 규모 이상은 유치원·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

법」 제2조제25호의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 세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 마. (생략)

2. (생략)

④ ~ ⑥ (생략)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

가.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1.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2.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⑧ -----

-----중학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 ① ~ ④ (생략)
-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 설>

⑥ (생략)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기준 등 학교용지의 기준은 그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개발사업시행자가 제7항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현금의 산정기준, 납부 및 부과 방법, 용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 ~ 4. (현행과 같음)

5.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학교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조, 제2조, 제4조 및 제8조의 특수학교용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3조(리모델링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리모델링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부터 적용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붙임3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 ② (생 략) <u><신 설></u></p>	<p>제14조(대학의 진로교육)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대학의 장은 대학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사회 단체 및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대학내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u></p>
<p>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생 략) ② 국가진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10. (생 략) ③ (생 략)</p>	<p>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협력</u>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u>지역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u></p>	<p>제16조(시·도진로교육센터) ① ----- -----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u></p>

<p>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u>지역진로교육센터</u>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지역진로교육센터</u>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p>	<p>한다)의 <u>실정에</u>----- ----- ----- ----- ----- -----<u>시·도진로교육센터</u> <u>를</u>----- ----- -----.</p> <p>② -----<u>시·도진로교육센터</u> <u>의</u>----- ----- -----.</p>
<p><신 설></p>	<p>제16조의2(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① <u>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시·군·구의 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진로체험 운영·지원 등을 수행하는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u>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u>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u>조례로 정한다.</u></p>

<p>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생략)</p> <p>② 교육부장관은 <u>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u>의 교육청, 교육관련 연구소 등이 진로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진로교육 콘텐츠)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시·도의</u>-----</p> <p>-----</p> <p>-----</p> <p>-----</p>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진로교육센터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이 법에 따른 시·도진로교육센터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 중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도진로교육센터”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학술단체활동의 육성) ① <u>교육부장관은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을 위한 학술지 평가 등을 통하여 학술단체 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단체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학술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u></p> <p><u><신 설></u></p>	<p>제9조(학술활동의 육성·지원) ① <u>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 발간 지원, 우수 학술지 발굴·육성 등을 통하여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u></p> <p>② <u>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술 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학술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u></p> <p>제15조의2(연구윤리 실태조사) ① <u>교육부장관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현황, 연구윤리지침의 운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자체 연구윤리 규정 시행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연구윤리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u></p>

<신 설>

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결과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구윤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 관리)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성과(논문,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이하 “학술지원성과”라 한다)는 대학등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학술지원성과의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술지원성과의 유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원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대학등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학술지원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학술지원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학술지원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대학등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대학등이 학술지원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학술지원성과를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대학등이 소유한 학술지원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모하거나 공모 외의 방법의 절차가 시작되는 첫 학술성과부터 적용한다.

의사를 확인하여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생략)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생략)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생략)

당연퇴직 사유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의 조회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현행 제19조의4와 같음)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현행 제19조의5와 같음)

제19조의7(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현행 제19조의6과 같음)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생략)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설치) (현행 제19조의7과 같음)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생략)	제19조의9(유치원회계의 운영) (현행 제19조의8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교육활동보호센터
-----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설치·운영-----

-----.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또는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활동보호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관할청이 설치·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p> <p>① (생략)</p> <p>②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u>학교의 장</u>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신설></p>	<p>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학교의 장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u>은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의2(평생교육사의 보수교육)</p> <p>① <u>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20조에 따른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제21조에 따른 시·군·구평생학습관, 유치원, 학교, 외국교육기관 및 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평생교육기관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게 보수(補修)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u></p>

<신 설>

<신 설>

<신 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평생교육기관등의 장은 해당 평생교육기관등에 종사하는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방법 및 내용과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

----- 각급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이하 “각급학교등”이라 한다)-----

② 각급학교등-----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6조(과태료) ① (생략)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③ -----
----- 각급학교등 -----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등 -----

-----.

각급학교등 -----
-----.

② 대학(「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중 고등교육기관을 말한다)의 -----
-----.

③ 각급학교등 -----
-----.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